광양만권 13개 업체 오염물질 배출 적발

영산강유역환경청 조사 결과
공기 섞어 배출·방지시설 미가동
검찰 송치·과태료 부과 조치
기술지원단, 자율개선 돕기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순천·광양권역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통합점검을 한 결과, 13개 업체에 대한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사항을 분야별로 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 12건, 수질오염 배출 관련 2건 등 총 15건이다.

이중 10개 업체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수사한 후 관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인 3개 업체와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인 13개 업체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 조치토록 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주요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A업체의 경우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가지배출관'을 설치, 운영했다. B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다 적발됐다. C업체의 경우 당국에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됐고 D업체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이 나오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외부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지조절 장치나 가지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단속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추진중인 환경분야 통합점검(All in one)의 하나다. 지난 3월 광주권역과 4월 여수권역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한 점검이다. 통합점검은 기존, 부서별로 실시하던 점검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일시 점검을 함으로서 업체 부담은 줄이고 업무 효율은 높이자는 취지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최근 도입한 방식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지난 1999년 12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광양만권 소재 배출업체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점검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 녹색환경기술지원센터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이 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서비스도 병행하면서 업체의 자율적 개선능력을 높이는 계기도 됐다고 전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화학사고 15분 내 미신고 '3진 아웃'

차량 운반 땐 2시간마다 휴식

화학사고 발생 시 15분 이내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3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화학사고의 경우 초기 대응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해화학물질의 택배 이용도 제한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30일부터 화학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정한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된다.

즉시 신고를 위반한 업체의 처벌 강화, 사고대비물질 추가 지정, 유해화학물질 택배운송의 금지, 유해화학물질 장거리 운반 시 휴식시간 확보 의무화 등이 담겼다.

화학사고 즉시 신고 규정을 3회 위반한 사업장은 영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15분 이내로 관할 지자체나 유역환경청, 경찰서, 소방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즉시 신고 규정을 4회 위반 시 1개월 영업정지에 그쳤다.

즉시 신규 규정 위반과 관련해 환경부는 지난해 6월 4일 충남 금산군 램테크놀러지㈜ 불산 유출사고를 사례로 들었다. 불산 여과과정에서 파열판이 터져 불산이 유출됐는데 사고 발생 30분이 지나서야 119에 늑장 신고하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내용이다.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큰 사염화규소·실란·브롬 등 화학물질 28종이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됐다.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방류벽, 긴급 차단밸브 등의 설비와 취급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차량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거리가 200㎞ 이상(고속국도 340㎞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갖도록 했다.

개정 전 법률이 유해화학물질을 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제한했다면 개정 법률은 택배도 포함시켰다. 다만 시약 또는 소량 견본품은 예외적 허용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동물원·수족관 '동물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환경부, 관리법 시행 돌입
10종 이상 의무 등록 대상
수의사·사육사 고용 기준 마련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원과 수족관에 있는 동물 서식 환경을 규정하는 법적 기준이 처음 마련됐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갔다.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수족관 운영자에게 동물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과 등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간 논란이 됐던 동물원, 수족관에서의 동물 복지도 일정부분 향상될 전망이다.

이날부터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운영하려면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동물 10종 또는 50마리 이상 사육하거나 전시하는 동물원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수족관은 총 수조용량이 300㎥ 이상이거나 수조 바닥 면적이 200㎡ 이상인 시설이 의무 등록 대상이다. 동물의 질병, 적정 환경, 휴·폐원 관리 계획 등도 마련하도록 했다.

동물원은 수의사를 1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 사육사는 동물 40종 이하의 경우 1명 이하, 70종 이하 2명 이상, 70종 이상 3명 이상 고용토록 했다. 수족관은 고래 등 해양포유류를 사육할 경우에만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를 1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 수족관 사육사 고용 기준은 동물원과 같다.

환경부는 이번 법률 시행으로 동물원 및 수족관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서식환경이 개선되고, 동물 복지에 관한 인식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실내 체험 동물원도 대부분 20종 이상의 동물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이 법률에 의한 의무 등록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 시설도 최소한의 서식환경 기준이 갖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2015년 말 조사한 결과 국내 동물원은 46곳, 수족관은 10곳이었다. 최근에는 동물 20종 이상 보유한 실내 체험 동물원이 증가 추세다. 특히 소규모 동물원·수족관은 동물 복지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김형호기자 khh@

항공기 소음 단위 '웨클'→'엘·디이엔' 변경

국가 간 소음 비교 가능
환경부, 2023년부터 도입

항공기 소음단위가 현실에 맞게 변경된다.

환경부는 항공기 소음 단위를 현행 최고소음도 방식인 '웨클'(WECPNL)에서 등가소음도 방식인 '엘·디이엔'(Lden)으로 바꾸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 예고했다.

웨클(WECPNL·Weight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은 항공기의 최고소음도를 이용해 계산된 1일 항공기 소음 노출지표다. 엘·디이엔(Lden·day evening night)은 항공기의 등가소음도를 측정해 도출한 1일 항공기 소음도다.

이에 따라 항공기 소음 한도 기준은 공항인근 지역은 90(WECPNL)에서 75(Lden)로, 그밖의 지역 75(WECPNL)에서 61(Lden)로 기준이 바뀌게 된다.

항공기 소음 측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사전 준비와 그간 축적된 항공기 소음 측정값 분석을 위해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도입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항공기 소음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엘·디이엔(Lden) 단위로 통일되고, 실질적으로 느끼는 항공기 소음 한도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현행 항공기 소음 단위인 웨클(WECPNL)은 등가소음도 방식을 적용 중인 공장·도로·생활소음 등과 달라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미국, 유럽 등 대부분 국가도 엘·디이엔(Lden)을 항공기 소음 단위로 채택하고 있어 국가 간 항공기 소음 비교도 어려웠다.

현행 항공기 소음단위인 웨클(WECPNL)은 일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 소음단위를 1994년 도입한 것으로 일본은 앞서 지난 2013년 엘·디이엔(Lden) 으로 변경했다. 현재 전세계에서 웨클(WECPNL)을 쓰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중국 뿐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꽃망울 터뜨린 내장산 약난초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는 환경부 지정 희귀종으로 분류된 약난초가 꽃망울을 터뜨렸다고 30일 밝혔다. 약난초는 내장산을 비롯한 남부지방에 희귀하게 분포하는 여러해살이 풀로 뿌리에 항생물질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제공〉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매 매

● 19층 95㎡(28평)
● 보400/월47(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6000만원

● 8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3000만원

● 13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3100만원

문의 010-9203-6161